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
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○○○ (국방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병역사항 신고의무자 중 교육위원이 삭제됨에 따라 관련 인용 조문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가. 병역사항 신고기관 삭제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(안 제3조)

나. 병역사항 신고내용 통보 시 인용 조문 정비(안 제7조)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- 2) 입법예고(2024. . . ~ . 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- 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 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대통령령 제 호

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4호 중 “제17호”를 “제16호”로 한다.

제7조제1호 중 “제15호”를 “제18호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3조(신고기관) 법 제4조제1항 본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고의무자의 소속 기관”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.	제3조(신고기관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~ 13. (생략)	1. ~ 13. (현행과 같음)
14.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(제15호부터 제1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): 해당 지방자치단체	14. ----- ----- -- 제16호----- ----- -----
15. ~ 20. (생략)	15. ~ 20. (현행과 같음)
제7조(병역사항 신고내용의 통보) 신고기관의 장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병무청장이나 지방병무청장에게 병역사항 신고내용을 통보하려는 때에는 병역사항 신고의무자 명부에 병역사항 신고서를 첨부(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병역사항을 신고한 경우에는 첨부하지 아니한다)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신고기관의 장은 병역사항 신고서 사본 1부를	제7조(병역사항 신고내용의 통보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
신고기관에 보관하여야 한다. 1. 제3조제1호부터 제10호까지, 제10호의2, 제11호부터 제13호까지, 제19호 및 제20호에 해당하는 신고기관의 신고의 무자와 같은 조 <u>제15호</u> 중 중앙행정기관의 감독을 받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: 병무청장 2. (생략)	-----. 1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제18호</u> ----- ----- ----- -- 2. (현행과 같음)
---	---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병무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	
연 락 처	(042) 481 - 2677